

# Tax News Flash

April 2020



## Tax Incentives In Relation To The Covid-19 Pandemic

COVID-19 판데믹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과 경제 안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국가적 재해로 간주하고, 그 악영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 3월 31일부터 유효한 2020년 정부령(PERPPU) 1호;
- 4월 1일부터 유효한 재무부 규정 No.23/PMK.03/2020 (PMK-23); PMK-44로 대체

### Tax and customs provisions regulated in PERPPU-1

#### 1. 법인소득세 인하

세무회계연도	일반법인	IDX 상장사 <sup>1</sup>
2020년-2021년	22%	19%
2022년부터	20%	17%

2.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과세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통한 거래활동은 아래 언급하고 있는 세금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무부가 지정하는 국외 판매자, 국외 용역 제공자, 국내외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국외의 무형자산과 과세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역외적용;
  - 국외 전자상거래(e-commerce)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중요한 경제적 실체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PE)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 재무부가 지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실체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 매출액;
    - »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매출액; 그리고/또는
    - »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실제 사용자 수
  - 상기 b에서 언급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회사가 적용가능한 조세조약(조세회피 및 이중과세방지 협약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인도네시아내의 재화판매/서비스제공에 대해 전자거래세를 부과

국외 판매자, 국외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사업자는 상기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과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내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행정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국외 판매자 및 국외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사업자의 웹사이트에 접속이 제한됩니다.

3. 세무 관련 발행, 제출기한 등의 연장 COVID-19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각각에 따른 발행, 제출기한이 force majeure period<sup>2</sup>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됩니다:

구분	연장기한
이의신청(Objection) 제출기한	현재의 기한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조세환급결정통지서 발행 후 조세환급금의 반환	현재의 기한에서 최대 1개월까지 연장
다음의 발행업무: » 조세환급결정통지서/ SKPKB(Art 17B (1)) » 이의신청결정통지서/Art 26(1) » Art 36(1)에 따른 행정과태료 면제 및경감신청, 정확하지 아니한 과세결정의 경감 및 취소신청, 세무조사결과 취소신청 등	현재의 기한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4. Customs facility  
관세 관련 인센티브  
재무부장관은 다음의 목적에 따라, 재무부령을 통해 수입관세의 면제 내지 관세율 인하 등 경감형태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COVID-19 판데믹의 통제 및 대응, 또는;
  - 국가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위협의 처리 및 대응

<sup>1</sup> 인도네시아주식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총주식의 40%이상을 IDX에상장하고특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sup>2</sup>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Indonesian National Board for Disaster Management)의 장이 결정하는 기간, 4월 25일 현재, 해당 기간은 2020년 2월 29일 ~ 동년 5월 29일

## Tax incentives to businesses operating in certain sectors impacted by the Coronavirus (PMK-23)

구분	세제혜택	혜택대상 과세기간	A다음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적용가능		DJP Online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서 제출 및 적용통지 여부	Realization Reports *)
			H산업분류코드 <sup>3</sup> 가 PMK-23의 다음에 해당	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 <sup>4,5</sup>		
Article 21 개인근로소득세	정부부담	2020년 4월부터 9월	별첨 A	✓	예	제출대상 ○
Article 22 수입원천징수세	면제	2020년 9월 30일까지	별첨 F (PMK-44 별첨 I)	✓	예	제출대상 ○
Article 25 법인세	30% 감면	2020년 9월 30일까지	별첨 F (PMK-44 별첨 N)	✓	예	제출대상 ○
VAT 부가가치세	부가세조기환급	2020년 4월부터 9월	별첨 F	✓	아니오	제출대상 X

\*) 납세의무자는 각각의 기간에 대응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1. PMK-23에 따라, 2020년 4월 ~ 6월의 reports를 7월 20일까지, 7월부터 9월까지의 reports를 2020년 10월 20일까지 각각 제출
2. PMK-44에 따라, 매월의 reports를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현행)

### 1. Article 21 Employee Income Tax

정부는 다음 근로자에 대하여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의 Article 21에 따른 개인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 상기 table에 해당하는 적격한 고용주로부터 받은 소득;
- Tax ID No. (NPWP)를 보유한 근로자; 그리고
- 연환산하여 IDR 2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 소득금액을 수령하는 근로자.

적격한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DJP Online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 세제혜택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rticle 21에 따른 개인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 부담의 주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혜택의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수령하는 세제혜택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2. Article 22 Income Tax on Imports

Article 22에 따른 수입원천징수세는 상기 table에 해당하는 적격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 면제됩니다. 적격한 납세의무자는 DJP Online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 세제혜택에 대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승인이 된다면, DJP Online에서 조세감면서류/Tax Exemption Letter/SKB(*Surat Keterangan Bebas/SKB*)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유효하며 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3. Article 25 Income Tax

상기 table에 해당하는 적격한 납세의무자는 2020년 9월까지 Article 25에 따른 월 선납법인세에 대한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DJP Online을 통하여 세제혜택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Value Added Tax (VAT)

정부는 상기 table에 해당하는 적격한 납세의무자를 자동적으로 저위험납세자로 간주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제공할 것입니다. 납세의무자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환급포지션에 있는 경우, 2020년 11월 1일 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1역월 당 최대 IDR 50억까지 조기환급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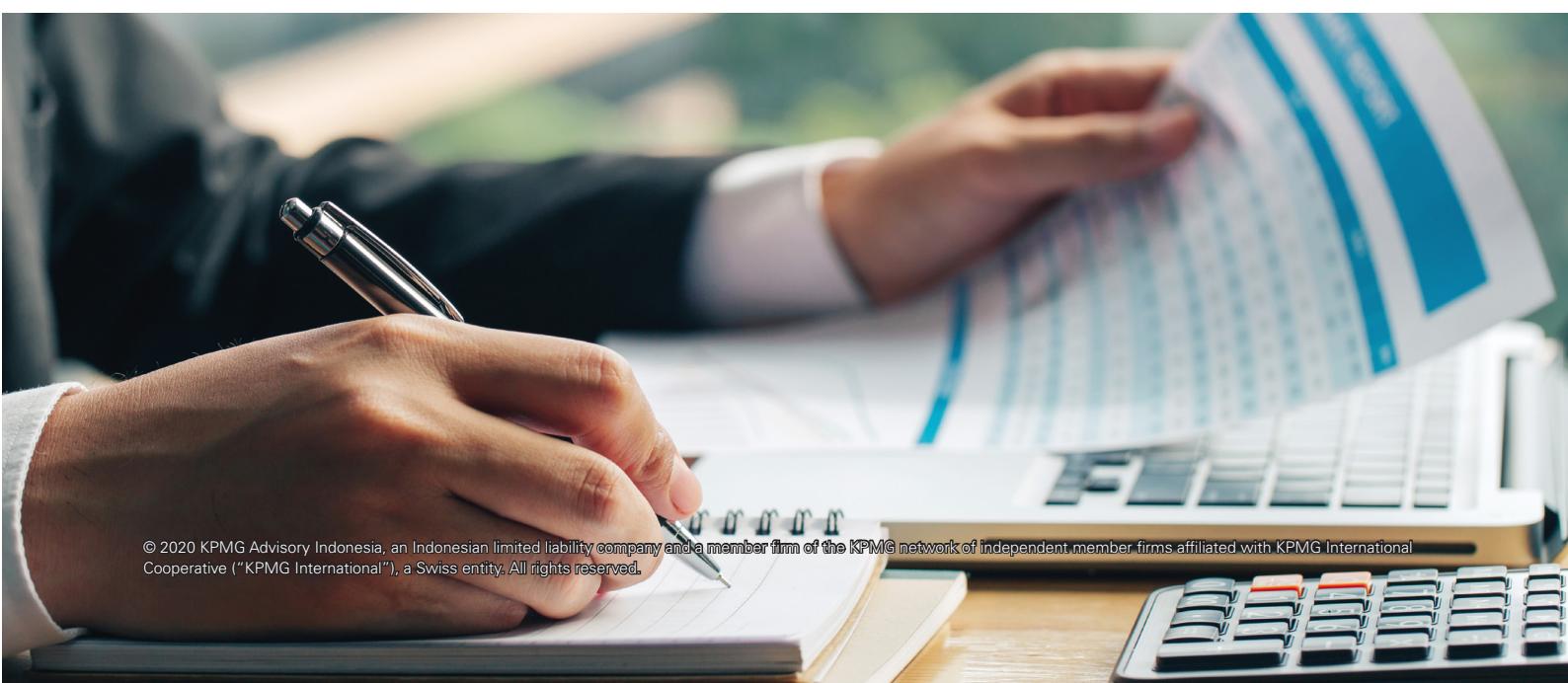
<sup>3</sup>산업분류코드/Business Classification Number/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단, PMK-44에 따라, 제조업 중심으로 혜택을 받던 PMK-23에서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sup>4</sup>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Import Facility for Export Purposes/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t*)

<sup>5</sup>PMK-44에 따라, 4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자격을 취득하여 보세구역/BZ(BondedZone)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의 경우

## KPMG Notes:

- 정부령(PERPPU) 1호와 재무부규정 PMK-23이 수많은 납세의무자의 현금흐름에 숨통을 트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계속영업능력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방안이 더 필요합니다.
- 법인세율의 조정과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과세 모두, 올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 옴니버스 법안의 초안과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거래세(ETT)입니다. 현재 이 새로운 세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는 없으므로 상세한 시행방안 등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점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OECD 국가간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전자거래세(ETT) 내지 Digital Service Taxes를 도입한 국가의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법인세 신고/제출기한, 2020년 4월 30일도 force majeure period에 해당되나 연장대상이 아닙니다.
- 납세의무자 중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나,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올바른 산업분류코드(KLU)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DGT에서 발행한 FAQ에 따르면, 아직 2018년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제혜택 신청 전 납세의무자는 올바른 산업분류코드를 기재하여, 수정된 2018년 법인세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8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라면 납세의무자는 산업분류코드의 update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rticle 25에 따라 세무회계연도 2020년에 납부하여야 할 월 선납법인세의 계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에 따라 인하된 법인세율 외에도 만약 법인이 세제혜택을 받는 적격한 납세의무자라면, 30%의 감면세율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재무부규정 PMK-23은 서명이 필요한 하드카피 신청서의 template과 관할 세무서가 승인 또는 거부하는 영업일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DGT는 DJP Online website를 통하여 업무 process를 자동화하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통해 납세의무자는 쉽게 적용할 세제혜택을 선택하고, 즉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월 27일부터 유효한 재무부 규정 No.44/PMK.03/2020 (PMK-44)가 발표되었습니다. PMK-44는 PMK-23 보다 보다 확장된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PMK-44의 발표에 따라 PMK-23을 대체하며 PMK-23은 폐지됩니다. PMK- 44는 Article 21 Employee Income Tax, Article 22 Income Tax on imports, 그리고 Article 25 Income Tax 및 VAT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령 GR-23에 따라 연 매출액 IDR 48 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 0.5%의 최종분리과세(Final tax)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추가되어,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4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PMK-23의 세제혜택과 그 신청서 제출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혜택대상과세기간도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세제혜택을 신청하는 기간부터 혜택대상과세기간에 산입됩니다. 4월 30일에 발표된 SE-29에 따라, Article 25 Income Tax와 Article 21 Employee Income Tax에 대한 세제혜택은 각각 5월 15일과 5월 20일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하여 4월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세제혜택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고 Article 22의 세제혜택을 위한 SKB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Contact us

## KPMG Advisory Indonesia

### Tax Services

33<sup>rd</sup> Floor, Wisma GKBI  
28, Jl. Jend. Sudirman  
Jakarta 10210, Indonesia  
**T:** +62 (0) 21 570 4888  
**F:** +62 (0) 21 570 5888

### Abraham Pierre

#### Partner In Charge, Tax Services

Abraham.Pierre@kpmg.co.id

### Susanto

#### Head of Clients and Markets

Susanto@kpmg.co.id

### Jae Young Lee

#### Korean Business Desk

Jaeyoung.Lee@kpmg.co.id

[home.kpmg/id](http://home.kpmg/i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Advisory Indonesia, an Indonesian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